

#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「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」 등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166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0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로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「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」 등 8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함
  - ‘부락’ 를 ‘마을’ 로 변경(안 제1조)
  - ‘계기’ 를 ‘규정’ 으로 변경(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)
  - ‘납골당’ 을 ‘봉안당’ 으로 변경(안 제4조)
  - ‘지득’ 을 ‘알게됨’ 으로 변경(안 제5조)
  - ‘불입’ 을 ‘납입’ 으로 변경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  - ‘구좌’ 를 ‘계좌’ 로 변경(안 제8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**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**

**7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**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월 5일 ~ 1월 15일(1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**10. 관련부서 : 해당없음**

## **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「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」 등 일괄정비조례안**

제1조(「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단서 중 “자연부락”을 “마을”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계기하는”을 “규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계기된자”를 “규정된 자”로 한다.

제4조(「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묘지·납골당”을 “묘지·봉안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된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이자불입” 을 “이자 납입” 으로 한다.

제7조(「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불입방법” 을 “납입 방법” 으로 한다.

제8조(「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구좌” 를 “계좌” 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
	팀장 직위·성명	법무팀장 박상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윤라 (790-5520)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 제1조(하남시 통 · 반 설치조례)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확정기준) 통은 2개에서 2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<u>자연부락</u>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확정기준) ----- ----- ----- <u>마을</u> ----- -----.</p>

## 제2조(하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)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사업 및 기준)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<u>계기하는</u>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사업 및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하는</u> -----.</p>

## 제3조(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)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 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에 <u>계기된자</u>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p> <p>5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 (회계관계공무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규정된 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「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·폐수 쓰레기처리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<u>묘지·납골당</u>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.	제4조 (장려수당) ----- ----- ----- <u>묘지·봉안당</u> ----- ----- ----- -.

제5조(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복무) ①·② (생략)  ③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<u>지득한</u>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5. ~ 8. (생략)	제12조(복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③----- <u>알게된</u>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5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융자조건 등) ① (생략)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, <u>이자불입</u> 등은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(이하 “기금관리은행”이라 한다)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 ③ (생략) 5. ~ 8. (생략)	제16조(융자조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<u>이자 납입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5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융자금의 예치) ① (생략)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<u>불입방법</u> ,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.  ③ (생략)  5. ~ 8. (생략)	제19조(융자금의 예치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 <u>납입 방법</u> ----- -----.  ③ (현행과 같음)  5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<u>구좌</u> 에 입금한다.  ② (생략)  ③ (생략)  5. ~ 8. (생략)	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<u>계좌</u> -----.  ② (현행과 같음)  ③ (현행과 같음)  5. ~ 8. (현행과 같음)